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그린시티건설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위탁업체가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6.03.12(목요일)]**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무주택자격요건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나. 특별공급 대상자
 - ① 청년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임차인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6.03.12(목요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면서 특별공급 계약자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구비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 3)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요건 및 청년 특별공급의 연령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모델하우스 개관은 **[2026.03.12(목요일)]**이며 임대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의왕청계역시티프라디움.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청약상담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모집공고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일반공급, 특별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등·호수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마이너스 옵션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에서 시공된 상태로 임대, 입주, 관리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의왕청계역 시티프라디움 디하모니” 홈페이지(<http://의왕청계역시티프라디움.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지불되며,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 및 명의변경

- 계약 체결 후 계약자 명의 변경은 불가하나, 입주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복수의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자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부모로 한정하며, 이 주택의 다른 세대의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자 전부는 관계 법령상 임차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의 임차인은 어떠한 사유라도 공동명의자 중 1인을 단독명의로 하는 변경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공급/일반공급)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당첨 시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주택 소유 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기타 관련법령 및 임대차계약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06.01.)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8809(2026.02.27.)호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 수리
- 본 건축물은 경기도 의왕시 2025-건축과-신축허가-8(2025.04.10.)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 대지면적 : 9,479.5000㎡
- 주차대수 : 총 267대(공동주택 240대, 세대당 약1.5대, 근린생활시설 27대)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M-1블록)
- 용도지역·지구·구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여부 : 지구단위계획구역(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 상대보호구역(꿈열매유치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 지상최고 15층 4개동 총 160세대[특별공급 33세대(신혼부부 23세대, 청년 1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 번호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신혼부부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2026850014	71A	71.5628	23.0301	94.5929	67.4431	162.0360	-	-	28	28	2028년 4월
		71A-1	71.5628	23.0301	94.5929	67.4431	162.0360	5	3	-	8	
		71B	71.4205	23.0692	94.4897	67.3090	161.7987	-	-	15	15	
		71B-1	71.4205	23.0692	94.4897	67.3090	161.7987	6	3	-	9	
		84A	84.0762	27.1498	111.2260	79.2362	190.4622	-	-	36	36	
		84A-1	84.0762	27.1498	111.2260	79.2362	190.4622	6	2	-	8	
		84B	84.2489	27.0031	111.2520	79.3989	190.6509	-	-	48	48	
		84B-1	84.2489	27.0031	111.2520	79.3989	190.6509	6	2	-	8	
		합계							23	10	127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특별공급 대상은 청약 신청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접속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 이 주택은 청약 신청시, 일반공급(71A, 71B, 84A, 84B)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71A-1, 71B-1, 84A-1, 84B-1)으로 구분되어 청약홈에서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 × 0.3025 또는 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보증금 또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타입별 표기 안내

(단위 : m²)

타입	71A	71A-1	71B	71B-1	84A	84A-1	84B	84B-1
공고상 전용면적(m ²)	71.5628	71.5628	71.4205	71.4205	84.0762	84.0762	84.2489	84.2489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

· 공고, 기타 안내,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 홍보제작물은 타입으로 표현되어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차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10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또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일도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까지로 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임대보증금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타입	공급구분	동별/호별	층	공급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10%)		중도금(49%)					잔금(41%)
						1차	2차	1회차(10%)	2회차(10%)	3회차(10%)	4회차(10%)	5회차(9%)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09-10	2027-01-11	2027-05-10	2027-09-10	2028-01-10	입주지정일
71A	아파트 단지	101호, 2호, 3호, 4호	4층	4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54,450,000	248,050,000
			5층	4	611,000,000	10,000,000	5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54,990,000	250,510,000
			6층	4	614,000,000	10,000,000	5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55,260,000	251,740,000
			7층	4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55,530,000	252,970,000
			8층	4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55,530,000	252,970,000
			9층	4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55,530,000	252,970,000
71A-1	아파트 단지	101호, 2호, 3호, 4호	2층	4	427,700,000	10,000,000	3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42,770,000	38,493,000	175,357,000
			3층	4	441,000,000	10,000,000	3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39,690,000	180,810,000
71B	아파트 단지	101호, 2호, 3호, 4호	4층	3	598,000,000	10,000,000	4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3,820,000	245,180,000
			5층	4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54,450,000	248,050,000
			6층	4	608,000,000	10,000,000	5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54,720,000	249,280,000
			7층	4	611,000,000	10,000,000	5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54,990,000	250,510,000
71B-1	아파트 단지	101호, 2호, 3호, 4호	2층	4	423,000,000	10,000,000	3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38,070,000	173,430,000
			3층	4	436,000,000	10,000,000	3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39,240,000	178,760,000
			4층	1	441,000,000	10,000,000	3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44,100,000	39,690,000	180,810,000

타입	구분	동별/호별	층	공급세대수	임대보증금	계약금(10%)		중도금(49%)					잔금(41%)
						1차	2차	1회차(10%)	2회차(10%)	3회차(10%)	4회차(10%)	5회차(9%)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2026-09-10	2027-01-11	2027-05-10	2027-09-10	2028-01-10	
84A	아파트 단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4층	4	691,000,000	10,000,000	5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2,190,000	283,310,000
			5층	4	692,000,000	10,000,000	5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2,280,000	283,720,000
			6층	4	693,000,000	10,000,000	5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2,370,000	284,130,000
			7층	4	694,000,000	10,000,000	5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2,460,000	284,540,000
			8층	4	695,000,000	10,000,000	5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2,550,000	284,950,000
			9층	4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2,640,000	285,360,000
			10층	4	697,000,000	10,000,000	5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2,730,000	285,770,000
			11층	4	698,000,000	10,000,000	5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2,820,000	286,180,000
84A-1	아파트 단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층	4	490,000,000	10,000,000	3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9,000,000	44,100,000	200,900,000
			3층	4	505,400,000	10,000,000	40,54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50,540,000	45,486,000	207,214,000
84B	아파트 단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4층	4	691,000,000	10,000,000	5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9,100,000	62,190,000	283,310,000
			5층	4	692,000,000	10,000,000	5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2,280,000	283,720,000
			6층	4	693,000,000	10,000,000	5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9,300,000	62,370,000	284,130,000
			7층	4	694,000,000	10,000,000	5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2,460,000	284,540,000
			8층	4	695,000,000	10,000,000	5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2,550,000	284,950,000
			9층	4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2,640,000	285,360,000
			10층	4	697,000,000	10,000,000	5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2,730,000	285,770,000
			11층	4	698,000,000	10,000,000	5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2,820,000	286,180,000
			12층	4	699,000,000	10,000,000	5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2,910,000	286,590,000
			13층	4	699,000,000	10,000,000	5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9,900,000	62,910,000	286,590,000
84B-1	아파트 단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층	4	488,250,000	10,000,000	38,825,000	48,825,000	48,825,000	48,825,000	48,825,000	43,942,500	200,182,500
			3층	4	503,300,000	10,000,000	40,330,000	50,330,000	50,330,000	50,330,000	50,330,000	45,297,000	206,353,000

- 본 주택은 타입 및 세대별 주택도시기금(전타입 공통 120,000,000원)이 우리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이에 따라 해당 주택도시기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승인 전까지 사업부지에 근저당설정이 되며, 사용승인 이후에는 사업부지 및 건물 보존등기 후에 우선 설정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상기 타입별 임대조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1호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타입별 차등이 있으므로 동호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임대주택은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된 세대는 없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 인상분 미납 연체료, 관리비 등 제반금액과 우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공통)

-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모집 분야		자격 요건	선정 방법
특별 공급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6.03.12.(목))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 유형별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예비임차인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9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1,0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임차인의 동호 배정 예비임차인의 동호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미계약 세대, 계약해지 세대, 퇴거 세대 등이 2개 세대 이상 발생되어 예비임차인에게 임차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동호 배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신혼 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2026.03.12.(목))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계약자 1명을 정하여 2명 중 1명만 신청이 가능)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각 공급 방식 중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자(청년 특별공급)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청약은 반드시 해당 타입(71A-1, 71B-1, 84A-1, 84B-1)으로 청약 신청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 기준

순위	비율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6년 적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순위	100% 이하	~3,813,363원	~5,866,270원	~8,168,429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2순위	100% 초과 110% 이하	3,813,364원~ 4,194,699원	5,866,271원~ 6,452,897원	8,168,430원~ 8,985,272원	8,802,203원~ 9,682,422원	9,326,986원~ 10,259,684원	9,906,264원~ 10,896,889원	10,485,542원~ 11,534,095원	11,064,820원~ 12,171,301원
3순위	110% 초과 120% 이하	4,194,700원~ 4,576,036원	6,452,898원~ 7,039,524원	8,985,273원~ 9,802,115원	9,682,423원~ 10,562,642원	10,259,685원~ 11,192,382원	10,896,890원~ 11,887,516원	11,534,096원~ 12,582,649원	12,171,302원~ 13,277,783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합니다.
- 입주개시일 이후 특별공급 중 청년, 신혼부부 공급분에 대한 잔여물량은 각 타입별 특별공급 타 유형(청년, 신혼부부) 예비임차인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 주택)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에 따라 타입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타입별 공급세대의 9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의왕청계역 시티프라디움 디하모니” 홈페이지(<http://의왕청계역시티프라디움.com>)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일반공급 신청자격

구분	공급세대	내용
일반공급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구성원(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2호 규정에 따른 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 · 이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불가)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할 경우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충족 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이 주택의 입주 전 및 임대차기간 중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주택소유여부 검색 필요 자료 제출 안내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주 제한 또는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청약홈"검색)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 방법	·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 선정 및 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임차인은 타입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까지 선정할 예정이며 예비임차인은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본 공급의 예비임차인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별도 공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임차인 미계약 주택)이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 날까지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7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체 주택유형	1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써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 :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일반공급 전 타입 청약자 전원(당첨자 및 낙첨자 전원)
-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이용안내	· 주택청약 참가은행(IBK기업, KB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씨티,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서비스(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PC 청약시]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공공지원민간임대 선택」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타입 선택 ⇒ 청약자격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접속 후는 PC 청약방법 참조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공공지원)민간임대	○				○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당첨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상기 신청 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30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 신청 전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2의3호, 제2조 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4. 공급일정

■ 청약접수일정 및 당첨자 발표

구 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특별공급 (신혼부부/청년)	2026.03.17.(화) ~2026.03.18.(수) 09:00~17:30	인터넷 청약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10만원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 이체가능 금액 확인 필요)	· 일시 : 2026.03.23.(월) 16:0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일반공급 신청마감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 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제출, 계약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 소
구비서류 제출	2026.03.24. (화) ~ 2026.03.29. (일)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15)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26.03.30. (월) ~ 2026.04.01. (수) 10:00~16:00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임차인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임차인 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 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적격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으나 소명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을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당첨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으면 본 주택 입주 가능 시점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자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부의 경우 당첨자의 배우자가 계약자 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본인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5.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6.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8.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세)	·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9. 추가개별통지서류	·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공급 유형별	청년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3.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 본인 소득이 있을 경우	
		○	4.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 직계존속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5. 사실증명원	· 본인	· 본인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이 없는 세대원	
	신혼 부부	혼인 상태인 경우	○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2. 소득확인서류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 예정인 경우	○	1. 결혼 확인서류	· 본인	·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 예비 배우자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 만 19세이상 본인,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공통 (해당자)	○	1.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 관련 가구원 수 포함일 경우 발급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견본주택 비치)	
		○	2.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3. 비사업자확인각서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 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청년,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재직증명서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대상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세무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도금 대출 알선시 사업주체는 중도금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총 임대보증금의 49%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따라 타입별로 계약금(공급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 납부 이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계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담보대출 유무,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주택 소유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상담사와 임대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임대 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 대출")관련 내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금융기관을 알선해 드리며, 대출 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단,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치 않을 경우 사업주체의 이자 납부(이하 "중도금 이자후불제" 등)에 대한 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임대보증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임대보증금 납부일정을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미납시 공급계약서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중도금 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임대보증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및 사업주체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임대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계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 대출 시 대출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잔금대출을 알선하지 않고, 잔금 대출의 실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 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904-856491	(주)그린시티건설	동호수 계약자 성명 기재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1-1001 홍길동)
- 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견본주택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납부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1차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차별 중도금은 각 지정된 일자에 납부하고,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되, 실입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의 잔금, 중도금,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추가선택품목

■ 각 실

(단위 : 원)

구분	기본제공	추가선택품목	타입	공급금액
바닥 (거실,주방,안방,침실1,2)	일반 강마루	광폭 강마루	71A, 71A-1	2,900,000
			71B, 71B-1	3,000,000
			84A, 84A-1	3,100,000
			84B, 84B-1	3,500,000
천장 (안방,침실1,2)	일반 직부등	디밍등	71A, 71A-1	1,500,000
			71B, 71B-1	1,500,000
			84A, 84A-1	1,700,000
			84B, 84B-1	1,700,000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안방)	시스템에어컨 4대 (거실,안방,침실1,2)	71A, 71A-1	8,600,000
			71B, 71B-1	8,600,000
			84A, 84A-1	8,900,000
			84B, 84B-1	8,900,000

■ 현관

(단위 : 원)

구분	기본제공	추가선택품목	타입	공급금액
현관 팬트리	도어無 +도배지 +일반등	가구도어 +시스템가구(포스트타입) +센서등	71A, 71A-1	2,900,000
			71B, 71B-1	2,800,000
			84A, 84A-1	3,200,000
			84B, 84B-1	3,000,000
현관입구	-	3연동 중문	71A, 71A-1	1,300,000
			71B, 71B-1	1,300,000
			84A, 84A-1	1,400,000
			84B, 84B-1	1,400,000

■ 거실

(단위 : 원)

구분	기본제공	추가선택품목	타입	공급금액
아트월	포세린타일 (600×600)	포세린타일 (600×1,200)	71A, 71A-1	2,750,000
			71B, 71B-1	2,750,000
			84A, 84A-1	2,750,000
			84B, 84B-1	2,750,000
천장	일반 직부등	특화디자인 직부등 +간접등(우물천장)	71A, 71A-1	1,700,000
			71B, 71B-1	1,700,000
			84A, 84A-1	1,700,000
			84B, 84B-1	1,700,000

■ 복도

(단위 : 원)

구분	기본제공	추가선택품목	타입	공급금액
팬트리	도어無+도배지+일반등	가구도어+시스템가구 +센서등	71A, 71A-1	2,100,000

■ 주방

(단위 : 원)

구분	기본제공	추가선택품목	타입	공급금액
주방상판	MMA	엔지니어드스톤	71A, 71A-1	4,100,000
			71B, 71B-1	5,000,000
			84A, 84A-1	5,300,000
			84B, 84B-1	6,000,000
식탁등	일반 등기구	특화 등기구	71A, 71A-1	650,000
			71B, 71B-1	650,000
			84A, 84A-1	650,000
			84B, 84B-1	650,000
싱크볼+수전	라운드 싱크볼 +일반수전	사각 싱크볼 +디자인 수전	71A, 71A-1	1,650,000
			71B, 71B-1	1,650,000
			84A, 84A-1	1,650,000
			84B, 84B-1	1,650,000
주방가구	-	아일랜드장	71A, 71A-1	2,900,000
			71B, 71B-1	3,000,000
			84A, 84A-1	3,100,000
			84B, 84B-1	3,200,000
	-	주방팬트리+도어 +시스템선반	71B, 71B-1	1,700,000
			84B, 84B-1	1,700,000
			71B, 71B-1	8,500,000
			84A, 84A-1	8,600,000
도배마감	장식장	84B, 84B-1	8,700,000	
		71A, 71A-1	900,000	
		71B, 71B-1	900,000	
		84A, 84A-1	900,000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3구 인덕션	84B, 84B-1	900,000	

■ 파우더/드레스룸

(단위 : 원)

구분	기본제공	추가선택품목	타입	공급금액
시스템선반+화장대	도배마감	슬라이딩도어 +시스템선반 +화장대	71A, 71A-1	5,800,000
			71B, 71B-1	5,200,000
			84A, 84A-1	5,900,000
			84B, 84B-1	5,300,000
파우더/드레스룸 가전	-	천장형 제습기	71A, 71A-1	2,450,000
			71B, 71B-1	2,450,000
			84A, 84A-1	2,450,000
			84B, 84B-1	2,450,000

■ 침실

(단위 : 원)

구분	기본제공	추가선택품목	타입	공급금액
불박이장	도배마감	불박이장	71A, 71A-1	4,000,000
			71B, 71B-1	4,150,000
			84A, 84A-1	4,200,000
			84B, 84B-1	4,800,000

■ 욕실

구분	기본제공	추가선택품목	타입	공급금액
환풍기	기본 환풍기	복합 환풍기	71A, 71A-1	1,700,000
			71B, 71B-1	1,700,000
			84A, 84A-1	1,700,000
			84B, 84B-1	1,700,000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위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관련 홍보물 및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방향 및 치수, 재질 및 색상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견본주택 등에서 별도로 계약 체결한 추가선택 품목(안전 방법 방충망 등) 선택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은 설치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 및 마감재 시공 분에 대한 금액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별도 마감재 미시공으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 추후 미설치에 따른 금액 환불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해당 실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 및 천장 단열재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제품이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시, 실외기실에 실외기 배치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타입별 옵션 선택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추가선택품목으로 임대보증금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시기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 및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자(건설사)에 귀속되며, 원상회복 또는 변경 공사를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세대는 건축공정상 기본설치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홈바 및 팬트리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등기구 및 스위치 위치 또는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시 해당 위치는 벽지 마감 시공됩니다.
- 주방 특화(마감)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주방벽, 싱크대 상판을 임차인이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면적 및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다르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마감)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주방 싱크볼과 수전이 사각 싱크볼 및 고급수전으로 변경 설치되며 상세한 디자인 및 변경사양 등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마감)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MMA상판 및 타일벽체, 기본형 싱크볼, 기본형 수전 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주방 마감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해 감소되는 공사비용과 추가 시공품목의 공사비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므로 추후 임차인은 미설치에 따른 금액 환불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 고
추가선택품목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604-868673	(주)그린시티건설	동호수 계약자 성명 기재

※ 추가선택품목 계약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견본주택에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기준의 최소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8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통보 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 관리비에치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 대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대상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 없는 경우 등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 기준에 충족할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4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계약 이후 법정 기한 내 의왕시청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 해당 보증 가입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가입 기준에 따르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급촉진지구에서 임대사업 양수권자에게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사업 양수권자】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금이 출자해 설립한 임대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겨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17.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8.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 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 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임대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임대주택에서 장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우선 변제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임대차계약 이외에 별도의 확정분양계약 등에 따른 분양대금(또는 매매예약금)은 HUG의 보증대상이 아니며 HUG는 임차인모집공고상의 임대보증금만을 약관에 따라 보증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본 주택의 사업주체는 (주)그린시티건설이며, 시공회사는 (주)시티건설, (주)시티종합건설, (주)시티 입니다.
- 본 주택의 명칭은 "의왕정계역 시티프라자 디하모니"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임대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공급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본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각 타입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총 대지지분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청약자, 계약자,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단, 입주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제 요청시 사업자는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임차인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승인권자로 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 2년 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회사, 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계약자(임차인)가 보증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계약금 전부는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불되며, 계약

- 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자에게 반환하는 중도금 및 잔금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 됩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내 샘플세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 및 임대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내 및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건축허가)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및 임대 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 및 임대보증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으로 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파손한 시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해당주택의 임대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경관조명, 수경시설 설치,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사용시 입주 후 사용 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되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홈네트워크 서버(Server) 유지, 보수, 통신 등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화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설계·시공 상 유의사항

- 인허가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의 스펙, 색상, 내용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상가 등의 총 대지지분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등기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본 주택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모집공고문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경우 외부인 이용가능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외부인에 대한 방문주차 및 임시주차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E-카탈로그 및 3D평면도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등에 표현된 조감도, 조경배치도,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그래픽 표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정성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영향평가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 지역 및 동일지역의 타 시공사 및 동일 시공사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이후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며,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관련 법령에서 허용범위 내)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대지의 단차가 심할 경우 안전용 난간이 추가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단지 이미지 개선 등 차별화를 위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소방, 이삿짐)동선, 소방매트자리 등의 설치요청에 따라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외부창호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안목치수 기준입니다. 공사 시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으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사유로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시공 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아파트의 건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임대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임차인모집공고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차인모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건물의 건축물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CG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단지연면적(추가)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여건

- 청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국토교통부고시(2024-513호, 2024.09.30.)로 승인고시된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는 서울시계 남측 8km권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및 안양판교로에 접면하고 있습니다.
- 당해지구에 연결하여 월곶~판교선 청계역(가칭, '28년 개통예정)이 입지하고, 서측으로 인덕원역(L=2.2km 이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 초등학교는 없으며, 지구 외에 백운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지구 내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 학교 현황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학생배치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을 따릅니다.
- 당해 지구 내 홍수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이 2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반분양, 공공분양, 통합공공임대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계기관(의왕시 등)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공원녹지 조경공사,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 공원, 녹지, 하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환경

- 주변단지의 신축공사,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D/A, Top Light, 근린생활시설,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의 경관조명(계획시)에 의한 눈부심 등의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건축물(주동,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입면 및 형태,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시설이 101동 하부 및 103동 하부에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 면적 및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통행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의 도로는 소방차 등 비상차량용 도로입니다. (택배차량 진입 등은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의 위치적 특성상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1층 필로티 및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석재는 입면디자인에 따라 석종, 마감면 등의 변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른 소방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구간 및 소방/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대상이 아닙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1층(지상층) 전, 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 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축허가 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본 단지는 도로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일부 조망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현장여건에 맞춘 위치에 한국전력공사 개폐기가 설치됩니다.
- 본 단지의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실측소음도를 측정하여 소음기준 초과 시 단지 경계선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각 세대는 지역난방으로 계획됩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하헬룸,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의 경우 101동 남측, 102동 북측, 103동 북측, 104동 북측, 지하 1층의 경우 103동 하부 3개소, 104동 3개소, 102동 3개소, 101동 3개소, 지하 2층의 경우 101동 하부 남측, 102동 하부 남측, 103동 하부, 104동 하부에 헬룸이 설치되며,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및 전기실, 헬룸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배관(배관,덕트류 등) 및 전기트레이(트레이, 박스 등)가 노출설치 될 수 있으며, 옥상층에는 오배수 통기관 및 각 세대의 주방용 공동배기(무동력흡출기)로 인하여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홀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인허가 조건에 따라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각 동 펠로티 내에는 소방제연용 헬륨의 그릴창이 설치되며, 제연헬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는 기간사업자에 의한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됩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2개층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층에서 해당 동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는 약 2.7m이며, 지하1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 지하2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 주차구획 높이는 2.1m 이상 계획됨. 주차장의 최저 차로 높이 및 유효 층고 높이에 따라 탑차 등의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의 주차대수는 총 267대(아파트 240대, 세대당 약1.5대, 근린생활시설 27대)이며, 일반주차보다 규격이 작은 경차 주차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경차규격 가로2.0m×세로3.6m)
- 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동별 주차장 형평성을 배분하여 동선 계획이 되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고,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시행자의 다른 분양상품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헬룸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 또는 벽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위치에 따라 지하 동출입구와 주차면 사이의 이동거리가 일정치 않고, 근접한 주차면이 타 주거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불편할 수 있으나,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구 내 고압송전선로(철탑3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관련 협의 및 공사여건 등에 따라 입주 이후 지중화 공사가 완료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기준 남측에 위치한 수도권 제 1순환 고속도로에 의해 일부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기준 서측 인근에 위치한 전기공급시설에 의해 일부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썬큰은 본 단지 내 파인엔트리가든 북측에 설치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본 단지 내 지하 1층에 완속 충전시설 11대, 급속 충전시설 3대가 설치 될 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MDF실 등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개별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면적 변경 등에 따라, 도로면적(보도 포함)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부분(계단, 복도 등) 및 이와 유사한 공간(옥상, 피난층 등)은 당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특정 세대의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 디자인, 마감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실은 본 단지 내 썬크 동측에 설치 위치로 시공 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옥상에는 해당시설의 에어컨실외기, 환기시스템(탈취유닛)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단위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정하며,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 면적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Type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약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류의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방, 욕실, 등에 적용된 타일자재의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미설치, 신발장, 침실 불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어 있지 않음.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 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
- 주방가구 상판에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품목(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에 설치되는 난간과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의 크기 및 위치, 하부턱 높이, 난간대 설치여부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임대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가 설치되는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 및 재질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바닥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의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점검 편의 등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깊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기는 직접배기방식이고, 주방은 타입별로 배기방식이 직접배기방식 또는 공동배기방식으로 시공되며,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동배기방식의 경우 옥상층에 노출로 무동력 흡출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도시가스배관은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에 계량기까지만 설치되며, 주방내부에는 인덕션 설치로 인하여,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급수-급탕분배기 등은 건축허가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깊이/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실에 우수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령상 아파트 각 세대 발코니1 내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지상3~10층의 경우 소방법령에 의하여 추가로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세대 발코니1은 물을 쓰지않는 발코니로 계획된 공간으로, 급수 및 배수시설이 설치 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2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2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드레인, 선홍통,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미관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도시가스배관 및 배수배관이 노출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 세대용 우수, 배수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유선리모컨은 없으며, 별도의 무선 리모컨을 제공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경우 각라인별 층수가 상이하여,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방 등의 공동배기(무동력흡출기)덕트 및 주방, 욕실 등의 통기관이 있어 날씨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타입별로 주방 배기방식이 직접배기방식 또는 공동배기방식으로 시공되며,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실외기, 환기휀(탈취유닛)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탕을 위한 급탕열교환기는 설계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세대별 공용홀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고홍보물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 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포된 각종 홍보물 상의 이미지는 임차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 이후 단지 주변현황 (인접 APT 및 주택단지, 주변 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정류장, 단지 외부도로, 공장시설, 지원시설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임대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공급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임대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임대 당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가이드지침에 따라 입면 디자인 및 마감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 설계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조경도, 단지모형, 각 타입 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건축허가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본 단지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세대VR은 임대 홈페이지(<http://의왕청계역시티프라디움.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일 타입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임대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포장,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 냉각탑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으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부대시설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경 외부공간 모형은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식재, 시설물의 위치 및 포장마감, 포장패턴 등)
- 견본주택에 84A, 84B타입 유닛이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미설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견본주택의 연출용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고,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폴리싱타일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 실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실 시공 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홈페이지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되어 있으며, 추후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기, 점검구 등은 실제 시공 시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시공 시 등기구의 색온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
- 제공되는 품목, 선택할 수 있는 품목 및 평면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적용되지 않은 평면의 형태 또는 제공품목(가구 및 시스템선반 등)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디퓨저, 스위치류, 선풍통,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약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 및 가구형태 등은 타입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참조하기 바라며, 세대모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마감자재, 가구 및 제공품목 등의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타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 및 가구 가전은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본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모델하우스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과 별도 유상옵션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및 유상옵션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임대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평면, 시설물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존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임대광고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임대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학교배정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의 설립계획 및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아파트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초등학생은 덕장초등학교로 배정 예정이며, 통학구역은 관련 행정 및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임대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 백운중학교(백운중, 덕장중, 갈미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학군내 선지망 후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 학교군은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의 경우 의왕시 기존 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설립, 학급당 학생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교육여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교육시설의 학생 통학구역, 학교군, 배정방법 등 매년 설정, 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지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동 법에 의한 금지행위 및 건축물 용도제한을 적용 받으므로 이 점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배치 여건이 어려울 시 학군내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사항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령, 집합건물법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 조망권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본 단지의 마감사항,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인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식재, 시설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소유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소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상 동일한 타입이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VAT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건축	산솔건축사사무소	675,400,000원	274-01-01612
소방	주식회사 한백에프앤씨	229,900,000원	215-87-41360
전기	주식회사 한백에프앤씨	159,500,000원	215-87-41360
통신	주식회사 한백에프앤씨	50,600,000원	215-87-41360

■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자	시공사		
상호명	주식회사 그린시티건설	주식회사 시티건설	주식회사 시티종합건설	주식회사 시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57(역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8, 3층 (삼성동, 에이치에스타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203-1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30-16, 204호
법인등록번호	115211-0044342	110111-4888834	200111-0042295	284111-0070022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의왕청계역시티프라디움.com>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15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1577-5378



견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15번지